

사 규 번 호	60-12
관 리 부 서	글로벌경영진단팀
등 급	일반

삼양식품(주) 윤리규정

[규정 제·개정 내역]

[illegible]

삼양식품(주) 윤리규정

2024. 12. 09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삼양식품(주) 임직원 모두가 정직과 신용이란 경영이념 아래,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, 주주,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·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윤리규정(이하 "규정")을 제정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삼양식품(주) 및 그 해외법인, 관계회사 등의 계약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더불어 고객, 주주,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회사: 삼양식품(주), 해외법인, 관계회사 등을 포함한다.
- 임직원: 회사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.
- 이해관계자: 회사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해의 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.
- 협력업체: 회사에 원·부자재, 상품, 용역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.
- 경쟁업체: 회사와 동일한 사업군 또는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.
- 법규: 회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규 등을 말한다.

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4조 (고객에 대한 행동원칙)

- ① 고객이 회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②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5조 (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)

- 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
- ② 고객의 재산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고객이 의견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, 정확하게 응답한다.
- ④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.

제3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6조 (법규의 준수)

- ① 국내·외 모든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, 지침, 도덕 등을 준수한다.
- ②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,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따른다.
- ③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- ④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물적·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
제7조 (글로벌기업)

- ①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로서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- ② 회사는 각국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국제협약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③ 회사는 수출/입과 관련된 법규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8조 (사회활동 참여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·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
제9조 (정치에 대한 관여 금지)

- ①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존중한다. 단, 임직원 신분으로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한다.
- ②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.
- ③ 정치인, 공직후보자 또는 공무원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불법 또는 비공식적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.

제10조 (환경보호)

-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규, 회사 규정 등을 준수하며 환경오염의 방지·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 친화적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한다.
- ②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깊이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,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.

제11조 (안전 및 건강 중시)

- 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
- ②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.

제4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12조 (주주에 대한 책임)

- ① 회사는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.
- ② 회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, 성장·발전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
제13조 (회계의 투명성 및 정보의 제공)

- ① 회사는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·유지·관리한다.
- ②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는 관련 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.
- ③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알권리와 정당한 요구, 제안 등을 존중하고, 경영관련 정보는 관련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.

제5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14조 (협력업체와 파트너십에 대한 원칙)

- 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.
- ② 거래 공급업체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,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.
- ③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 상호책임을 완수하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④ 협력업체와 업무 수행 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, 협력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15조 (불공정 행위의 금지)

-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,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또는 부당 대우, 불공정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
-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락해서는 아니되며,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의 거래에 친인척이 연관되는 경우 윤리상담실에 신고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제6장 경쟁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16조 (공정한 경쟁)

- ① 경쟁업체를 존중하고, 경쟁업체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.
- ②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며,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- ③ 경쟁업체와 부당한 담합을 하지 않으며,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및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.

제7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

제17조 (임직원의 기본 윤리행동 원칙)

-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

- ② 임직원은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.
- ③ 임직원 상호 간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국적, 인종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임직원은 상호간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, 장애인에 대한 모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⑥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, 정보보호 정책, 회사 규정 등에 설정된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한다.
- ⑦ 임직원은 자신의 전문성 및 글로벌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타직무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과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이익을 지향한다.

제18조 (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및 대우)

- ①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이해가 상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법규나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임직원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그 부당성을 소명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임직원은 제 3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상담실과 상담한다.
- ⑤ 임직원은 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채용, 승진, 포상, 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정당하게 보상한다.
- ⑦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해당 문서를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.

제19조 (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지)

-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,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.
-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상담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 (회사 자산의 정당한 사용)

- ① 회사의 유·무형 자산 및 영업비밀 등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.
- ②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·무형 자산 및 영업비밀 등을 개인적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③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④ 지적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.

제8장 윤리경영 조직문화

제21조 (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이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② 상하 및 동료 임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한다.
-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조성한다.
- ④ 사내/외에서 일체의 도박행위를 금하며 사치, 낭비, 허례허식, 과소비를 지양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한다.

제9장 윤리규정의 준수

제22조 (윤리규정의 준수)

- ①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②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제23조 (위반사항의 신고 또는 제보)

- ①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임직원, 이해관계자 등은 윤리상담실에 인지된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거나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윤리상담실은 신고받거나 또는 상담을 진행한 윤리규정 위반사항, 의심사항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제24조 (신고자 보호)

윤리상담실은 임직원의 신고 또는 상담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익명 보장
2. 신고 또는 상담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
3. 승인된 인원만 열람 가능
4. 그 외 신고자 또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

제25조 (윤리상담실)

- ① 회사는 윤리규정, 지침,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임직원의 상담, 위반 신고 및 제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리상담실을 둘 수 있다. 윤리상담실은 글로벌경영진단팀에서 운영한다.
- ② 윤리상담실은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윤리상담실은 임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, 위반이 확정된 경우 징계관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윤리상담실은 제24조에 따라 임직원의 신고 및 제안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예방교육)

- ① 본 규정의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윤리에 대한 성숙한 마음가짐 및 책임감을 다지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윤리, 교육 등과 관련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기,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4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관련 지침)

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사항은 지침에 의거한다.

제3조 (자문 및 해석)

본 규정, 지침, 기타 제반사항에 규정되지 않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상담실, 법무관련 부서, 인사관련 부서 등에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